

의안번호	제 384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서 동 학 의원 등 13인
발의연월일	2020년 3월 4일

#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

( 서동학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384
----------	-----

발의연월일: 2020년 3월 4일

발 의 자: 서동학, 이숙애, 김영주,  
박성원, 이의영, 황규철,  
박문희, 박상돈, 송미애,  
이상식, 이상욱, 연철흙,  
허창원

## 1. 제안이유

학생의 교복 구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교복 지원 목적(안 제1조)
- 나. 정의(안 제2조)
- 다.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안 제3조, 안 제4조 )
- 라. 지원대상(안 제5조)
- 마. 지원방법(안 제6조)
- 바. 환수(안 제7조)
- 사.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생활교육팀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0-13호  
2020. 2. 26. ~ 2020. 3. 2.(5일간)
-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 구매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을도록 한 단체복을 말한다.
2.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교복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교복 지원 대상자는 충청북도 내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의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복 지원은 재학 중 1회로 제한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학교별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주관 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한 교복을 지원대상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한다.

③ 교복구입비 지원방법, 절차, 금액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환수)** 교육감은 제5조제1항의 교복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교복 지원비를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복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복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 지원은 2021학년도에 입학, 전입, 편입학하는 1학년 학생부터 적용한다.

# 관 계 법 령

## □ 교육기본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50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학생의 교복 구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를 증진시켜나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2. 비용 발생 요인

- 학생의 교복 구매 지원에 필요한 비용

## 3. 관련조문

- 교육기본법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4. 비용 추계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안 제6조(지원 대상) 교복 지원 대상자 충청북도 내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
  - 그 밖에 교육감이 교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나. 추계 결과

연간 소요비용 추계		연도별 소요비용 추계(단위: 천원)					
산출기초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1. 교복비 지원	<b>43,804,656</b>	8,266,144	8,291,431	9,109,223	9,005,900	9,131,958	<b>43,804,656</b>
가. 교복비 지원	<b>43,804,656</b>	8,266,144	8,291,431	9,109,223	9,005,900	9,131,958	<b>43,804,656</b>

○ 산출근거

(단위:원,명)

구분	단가	학생수	금액	비고
2021년				
중1학년 신입생	309,663	13,677	4,235,260,851	
고1학년 신입생	309,663	12,860	3,982,266,180	
특수 중1학년 신입생	309,663	66	20,437,758	
특수 고1학년 신입생	309,663	91	28,179,333	
<b>합계</b>		<b>26,694</b>	<b>8,266,144,122</b>	
2022년				
중1학년 신입생	313,998	13,054	4,098,929,892	
고1학년 신입생	313,998	13,195	4,143,203,610	
특수 중1학년 신입생	313,998	66	20,723,868	
특수 고1학년 신입생	313,998	91	28,573,818	
<b>합계</b>		<b>26,406</b>	<b>8,291,431,188</b>	
2023년				
중1학년 신입생	318,393	13,796	4,392,549,828	
고1학년 신입생	318,393	14,657	4,666,686,201	
특수 중1학년 신입생	318,393	66	21,013,938	
특수 고1학년 신입생	318,393	91	28,973,763	
<b>합계</b>		<b>28,610</b>	<b>9,109,223,730</b>	
2024년				
중1학년 신입생	322,850	13,867	4,476,960,950	
고1학년 신입생	322,850	13,871	4,478,252,350	
특수 중1학년 신입생	322,850	66	21,308,100	
특수 고1학년 신입생	322,850	91	29,379,350	
<b>합계</b>		<b>27,895</b>	<b>9,005,900,750</b>	
2025년				
중1학년 신입생	327,369	13,867	4,539,625,923	
고1학년 신입생	327,369	13,871	4,540,935,399	
특수 중1학년 신입생	327,369	66	21,606,354	
특수 고1학년 신입생	327,369	91	29,790,579	
<b>합계</b>		<b>27,895</b>	<b>9,131,958,255</b>	

- 교복 학교주관구매 권고 상한 가격에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2019년 1.4%) 매년 1.4% 추정치 반영
-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입생 4년간 배치계획 참고(2025년은 전년도 준해서 편성)
- 특수학교 신입생(2021년~2025년)은 2019년 교육행정요람 참고(대상학생 미선정)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8,266,144	8,291,431	9,109,223	9,005,900	9,131,958	43,804,656	
세 출							
교복비지원	8,266,144	8,291,431	9,109,223	9,005,900	9,131,958	43,804,656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8,266,144	8,291,431	9,109,223	9,005,900	9,131,958	43,804,656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8,266,144	8,291,431	9,109,223	9,005,900	9,131,958	43,804,656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